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가.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하는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.

나. 조례의 근거가 된 상위법을 반영하여 자활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,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제명변경

- 현행 : 성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
- 개정 : 성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나. 자활기금의 사업 범위 조정

-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고
- 자활기금의 용도 중 사업의 한도 제한을 삭제

다.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 자금 이자율 및 상환 연체율 인하 조정

- 이자율 - 현행: 5%, 개정: 2%,
- 상환연체율 - 현행: 연15%, 개정 :일반 시중은행의 최저 연체율

4. 관련법령

가.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및 같은법 「시행령」

5. 검토의견

□ 제출자, 개정이유, 주요내용, 관련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.

○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.7.1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일부개정으로 자활기금의 적립(제18조의 3)'이 신설되어 보장기금을 자활기금으로 명칭 변경되어 조례의 일부 변경사유가 발생되었고

○ 자활기금의 사업법위 조정으로 자활기금의 용도 중 사업의 한도 제한을 삭제하고 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지원을 추가하며

○ 자활공동체에 대한 대여 자금 이자율을 현행 '5%'에서 '2%'로 개정하고자 하며, 상환연체율을 현행 '15%'에서 '일반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'로 개정하고자 함으로

○ 결론적으로 상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사항으로 법적근거와 사업의 목적이 타당하며 조례의 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다만 상환연체율이 일반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로 적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그 연체율이 비교적 높다고 인지되어 될 경우에는 수요자를 위한 적극적 행정으로 '일반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'에 일정 비율을 적용함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.

○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